

정책과제도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I.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경과

- 지난 10여년간 외국인력 운영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급증,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¹⁾이 제정·공포(2003. 8. 16.)됨에 따라 2004. 8.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본격 시행 예정
 - 동법 부칙에 따라 산업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2003. 9.~2003. 11.)를 이미 실시하여 184천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함(최장 2년간 취업활동 허용).
 -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되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에 흡수·운영

◆ 기본방향

- 외국인력은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3D업종 등)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내국인의 고용기회 잠식과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해 방지
-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도입업종·규모 결정
 - 저임금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안주할 경우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국인력 도입업종·규모 결정

* 본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은 2004. 3. 25. 노동부 자료의 내용임.

-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의 투명화, 인권침해 등의 최소화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
 -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보호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한(反韓)감정 등의 갈등 최소화
-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 대체외국인력의 공급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불법고용·취업유인을 최소화
 - 효율적인 외국인 고용관리 체계를 구축(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활용)하고 불법체류자 규모와 연계된 송출국가 선정(벌칙(penalty)부여), 도입업종·규모 결정

II.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

◆ 송출국가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 송출국가는 그간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수로 제한(산업연수생 송출국가는 17개국)
 - 송출국가 선정기준: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이탈률, 송출과정의 투명성, 외국인근로자 만기출국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 등
- 관계부처 회의 및 선정기준별 국가평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을 송출후보국가로 내정하고 현지조사 실시(2004. 3. 8.~2004. 3. 13.)하여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송출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예정
- 각 국가의 인력송출관련 기본인프라 구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함.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또는 모(母)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본 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 1단계(MOU 즉시 체결가능국): 인력송출이 준비된 필리핀,2) 태국, 몽골3)
- 2단계(미비점 보완후 MOU 체결국): 공공송출기관 부재 등 미비점이 발견된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4월 말까지 보완대책 수립시 양해각서 체결

○ 2월 말을 기한으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중 송출국가의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구직자 풀(Pool)에 포함되도록 송출국가에 요구기로 함.

◆ 외국인력 도입업종

-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외국인력제도(취업관리제, 산업연수생)의 5개 허용업종으로 제한함.
-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
 - 숙박업종, 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검토기로 함.
 - 도입업종4)

구 분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없 음
건설업	·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SOC건설 ⁵⁾ 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 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에 한함)	· 도급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상반기 중 허용 예정)
서비스업 (6개세부업종)	없 음	· 음식점업 · 건축물일반 ·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 개인간병인 · 가사서비스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없 음
연근해어업	없 음	없 음

2) 2004. 4. 23. 송출국가 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3) 2004. 5. 3. 몽골과 양해각서 체결.
 4) 2004. 4. 13. 노동부 발표 “200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공고 제2004-67호)의 내용임.
 5) social overhead capital: 국가기간산업 건설공사(예; 댐, 도로, 발전소 등)

※ 현행 취업관리제도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로 운영 중이나>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2004. 8. 17.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특례 규정으로 운영 예정

◆ 외국인력 도입규모

- 산업별 인력수급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규모로 도입함.

<제도별 도입규모 · 시기>

(단위 : 천명)

업종	신규 도입규모	제도별 도입규모 · 시기		
		제도	도입규모	도입시기
제조업	40	산업연수제	23	상반기
		고용허가제	17	하반기
건설업	26	산업연수제	8	상반기
		취업관리제	12	
		고용허가제	6	하반기
서비스업	4	취업관리제	4	상/하반기
농축산업	4	산업연수제	2	상반기
		고용허가제	2	하반기
연근해어업	5	산업연수제	5	상반기
전체	79	산업연수제	38	상반기
		취업관리제	16	상/하반기
		고용허가제	25	하반기

- 사업주의 선호도가 높은 송출국가의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별 도입규모 배분
 - 각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동일한 규모로 작성하고, 작성된 외국인 구직자 풀(Pool) 내에서 사업주 선택에 따른 취업알선 및 적격자 추천
 -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배분(신규 도입규모의 범위 내)
- 2005년부터는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비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양 제도간 신규 도입규모를 매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송출국가별 도입규모는 각 송출국가별로 동일한 규모의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

성·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풀(Pool) 내에서 희망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는 도입규모 방식을 채택하였음.

○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⁶⁾

－ 제조업

-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가입 내 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로 판단
- 내국인 피보험자수는 원칙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수를 기준(한국표준직업분류 활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4인 이하	1~2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3~5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501인 이상	50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건설업

- 고용허용인원=연평균공사금액×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⁷⁾

구 분	SOC공사	주택공사
원도급 공사	0.5	0.4
하도급 공사	0.65	0.52

－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내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내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내	21인 이상	10인 이내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내		

6) 2004. 4. 13. 노동부 발표 위 공고 참조

7) 연평균 공사금액=총계약(부기)금액×{12/총공사기간(월)}

◆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추진

- 200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예상됨. 이에 따라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 제조업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단속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함.
 -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캠페인 추진
 -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 외국인력제도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⁸⁾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기관	비 고
고 용 허가제	○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 비자(E-9)를 발급 ※ 3년간 취업허용, 사업장 이동 금지 원칙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 한법률 (노동부) · 2004. 8. 17. 이후 시행
취 업 관리제	○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등에게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을 부여해 입국을 허용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활동을 허용 ※ 현재 서비스업종에 한해 실시중이며 2004년 상반기 중 건설업 추가 허용 예정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예관 한규정 (노동부고시)

8) 2004. 4. 13. 노동부 발표 위 공고 참조